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2
----------	-----

제 출 일 : 2026. 3. 5.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다산아트홀 운영 체계를 재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조례안 제4조 ~ 제12조)
- 사용료 반환기준 구체화(조례안 제18조 및 규칙안 제3조)
- 수탁기관(문화재단)의 탄력적 운영 기반 마련(조례안 제24조 ~ 제25조)
- 회원제 및 감면 기준 정비(조례안 별표 2 및 별표 3 삭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1. 22. ~ 2026. 2. 11. (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1. 16. ~ 2026. 2. 12..

나)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의회법무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

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100분의 90

다. 사용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100분의 50

라. 사용일 9일 전부터 5일 전까지: 100분의 10

마. 사용일 4일 전부터: 미반환

제20조제2항 중 “위하여 별표 2에 따라”를 “위하여”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아트홀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획 공연 등에 대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문화예술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팀장 직위·성명	예술진흥팀장 강종인
	담당자 성명·전화	한지훈 (031-590-2562)

[별표]

아트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순수예술 (국악,클래식,연극,무용,오페라), 종합구성물 (뮤지컬 등), 대중음악/행사
아트홀	오전	150,000
	오후	200,000
	야간	225,000
	심야	100,000(시간당)

□ 비 고

1. 구간별 기준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 및 심야로 정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오전 :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나. 오후 :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 다. 야간 :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 라. 심야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3. 기준시간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기본시간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심야시간의 경우 시간당 기준으로 함)
4. 추가 사용료의 산정 기준
 - 가. 1시간 이내 : 사용료 없음
 - 나.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 적용 시간대 사용료의 50%
 - 다. 2시간 초과 : 적용 시간대 사용료 전액
- ※ 적용 시간대 : 초과시간이 속하여 있는 오전, 오후, 야간 및 심야
5. 기본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무대, 객석, 연습실 및 분장실 사용
 - 나. 휴게시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사용
 - 다. 그 밖에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설비 사용

2. 부대설비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구분	종류	기준	사용료	비고
무대	음향반사판	1식(1일)	50,000	음향반사판 공연장 전문 인력 필수 동원
	덧마루	1식(1일)	50,000	
	합창연주단	1식(1일)	50,000	
	댄스플로어 (무용매트)	1식(1일)	80,000	
	피아노 (Kawai-gx7)	1대(1일)	50,000	조율비 사용자 부담 (조율사 아트홀 지정)
	무대막(샤막)	1식(1일)	30,000	
조명	조명콘솔	1식(1일)	50,000	
	조명기구	1식(1일)	30,000	
음향 및 영상	음향콘솔	1식(1일)	50,000	
	유선마이크 (기본 3대)	1일	10,000	추가 1대 당 5,000원 부담
	무선마이크	1채널(1일)	15,000	건전지 사용자 준비
	모니터 스피커 (기본 2대)	1일	10,000	추가 1대 당 10,000원 부담
	빔프로젝터 (10,000Ansi)	1식(1일)	100,000	

□ 비고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u> <u>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u>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u> <u>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남양주시</u> <u>다산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u> <u>“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1.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u> <u>사항</u></p> <p><u>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u>3. 그 밖에 아트홀의 관리 및 운</u> <u>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u> <u>하는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u> <u>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u> <u>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u> <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u> <u>중에 호선한다.</u></p> <p><u>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u> <u>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u> <u>다.</u></p> <p><u>④ 당연직위원은 아트홀 업무</u> <u>담당 과장 또는 국장이 된다.</u></p> <p><u>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회 시의원인 위원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1. 2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1. 연 1회 이상 정기회와 재적위

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
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트홀 업무 담당팀
장이 되고, 서기는 아트홀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심의 · 의결 내
용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또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운영위원회의 회의
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삭 제>

<삭 제>

<삭 제>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아트홀의 사용은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한다.

1. 정기사용: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사용: 정기사용 공백 기간

④·⑤ (생략)

제16조(사용료)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2. (생략)

3. 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제13조(사용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삭 제>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 -----
-- 별표-----
-----.

제18조(사용료의 반환) -----

-----.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

까지: 100분의 90

제20조(관람료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아트홀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② (생략)

<신설>

제25조(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29일전부터 20일

전까지: 100분의 90

다. 사용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100분의 50

라. 사용일 9일 전부터 5일 전

까지: 100분의 10

마. 사용일 4일 전부터: 미반

환

제20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하
여 -----
-----.

제2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아트홀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아트

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

자체 기획공연 등에 대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비 및 할인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비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기간 시작 전에 탈퇴를 신청한 경우: 전액

2. 가입기간 중에 탈퇴를 신청한 경우: 가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가입일부터 탈퇴 신청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

④ 그 밖에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 기획공연 등에 대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다산아트홀의 공연기획 등을 심의하였던 운영심의회 조항을 삭제하고 그 역할을 재단이 담당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연장의 공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다산아트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심의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회원제 운영 및 환불 규정 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비용은 없음.

4.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붙임2 입법예고 결과 보고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결과보고(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개 정 안

-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6. 1. 22.(목) ~ 2. 11.(수) / 20일간
- 다.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라. 예고결과: 의견없음
- 마. 향후계획: 제514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주무관	한기윤	예술진흥팀장	강병진	문화예술과장	박민철	문화교육국장	전결 2026. 2. 12
협조자	주무관	정호진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이영숙
시행	문화예술과-3067			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근곡동)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2562	팩스번호	031-590-2479		/ 4ending@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3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6A경기남양003)

1. 문화예술과-1098(2026.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경기남양003) 1부. 끝.

여성 아동과장 *이원희*

주무관	이원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이원희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496	(2026. 1. 19.)		결수 문화예술과-1140	(2026. 1. 1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여성아동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59		/ yhlso0127@korea.kr	/ 비공개(5)

- 청탁응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남양003		
정책명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한지훈	전화번호 031-590-25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1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조례안 제4조 ~ 제12조) ○ 사용료 반환기준 구체화(조례안 제18조 및 규칙안 제3조) ○ 수탁기관(문화재단)의 탄력적 운영 기반 마련 (조례안 제24조 ~ 제25조) ○ 회원제 및 감면 기준 정비(조례안 별표 2 및 별표 3 삭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26년 01월 18일</p> <p>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p> <p>(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p> <p>문화예술과장 귀하</p>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6-03, 04)

문화예술과-1096(2026. 1. 16.)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문관

주우관 **송요원** 행정관리팀장 **이영주** 감사관 **문경서** 2025. 1. 19.
협조자
시행 감사관-794 (2025. 1. 19.) 접수 문화예술과-1171 (2025. 1. 1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risa@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남양주-03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 가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송호림
입 안 부 서	문화예술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한지훈
평 가 결 과 통 지 과 일	2026. 1. 19.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6년 1월 19일</p> <p>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p> <p>(담당자 / 연락처 : 송호림 / 031-590-4719)</p>			
<p>문화예술과장 귀하</p>			

붙임5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예비심사 검토 결과(「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1. 문화예술과-3035(2026. 2. 12.)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요청서 및 규제 영향분석서 등 관련 서류와 법리를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 해당 개정안은 다산아트홀 이용 또는 대관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이용료를 부과하고 시설 예약일을 준수토록 하여 노쇼(No-Show)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규정으로,
3. 해당 규제의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므로**,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붙임 규제심사 대상 여부 예비심사 결과서 1부, 끝.

